

www.odmc.or.kr



2016-2017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I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 소개



1.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	10
2.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10
3.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절차	11
4.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현황	13
5. 공공데이터 관련 상담·컨설팅 현황	20

II 분쟁조정사례

1.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24
1)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분쟁조정	24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약제비 현황 데이터	24
(2)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데이터	26
(3) 아산시 및 천안시 경매 데이터	30
(4)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데이터	33
(5) 한국연구재단, 한국 연구자 데이터	35
(6)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 데이터	38
(7) 국방부, 군매점(PX) 상품 데이터	40
(8)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자동차정비업체 등록 데이터	42
(9)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정보 Open API	44
(1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45
2) 제3자 권리 관련 분쟁조정	46
(1)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 시리즈	46
(2) 문화체육관광부, 유원시설업 업무 매뉴얼	48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모가 먼저 알고 아이에게 알려주는 메이커 교육	49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측정분석사 기출문제	50
(5) 산림청, 버섯도감의 사진 및 텍스트	51
(6) 국립농업과학원, 버섯은행의 사진 및 텍스트	52
(7)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념물 3D 데이터	53

3) 기타 분쟁조정	54
(1)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정보체계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	54
(2) 한국연구재단, KCI 제공 학술참고문헌(Open API)	56
(3) 행정안전부, 봉사참여정보서비스(Open API)	58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환경방사선량률DB(Open API)	59
2.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60
(1) 서울특별시,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60
3. 취하, 반려, 거부 사건	62
(1) 한국철도공사, 포항역 승하차 관련 데이터(취하)	62
(2) 국토교통부, 버스정보시스템(BIS) 데이터(취하)	63
(3) 법무부, 난민 인정 재신청자 관련 통계데이터(취하)	64
(4) 경찰청, 내외국인 범죄 관련 데이터(취하)	65
(5) 국토교통부, 항공협정(항공자유화) 현황 데이터(취하)	66
(6) 한국고용정보원, 2016 직종별직업사전(반려)	67
(7) 경찰청, 생활안전지도 내 치안안전 데이터(반려)	68
(8) 한국공항공사, 항공기 운항 및 주차데이터 서비스(반려)	69
(9) 식품의약품안전처, DUR 의약품 데이터 서비스(반려)	70
(10) 한국은행, 가게 및 비영리단체의 혼합소득 통계데이터(반려)	71
(1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이용의향에 관한 설문조사 데이터(반려)	72
(12)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휴·폐업데이터 AP(거부)	73

III 공공데이터, 분쟁위에 물어보세요

1.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76
· 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요?	76
·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77
· 공공데이터에 대외 공개가 곤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78
·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판단 하나요?	78
· 공공기관의 발간물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저작권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분리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79
· 외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경우 기관에게 제공의무가 있나요?	79
· 우리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특정한 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 신청 받았습니다. 신청인의 요구대로 파일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요?	79
·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후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80
2.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81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이 가능한가요?	81
· 이용조건을 부과하여 제공할 수 있나요?	82
·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82
·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악용하는 경우 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83
3. 분쟁조정 관련	83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83
· 공공기관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해당 기관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83
· '분쟁조정'이라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가 많은가요?	84
·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84

4. 기타	85
· 이용자가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제3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기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85
· 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 하나요?	86
·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제공은 다른 제도인가요?	87

표·그림

[표 1] 연도별 분쟁조정 현황	13
[표 2] 분쟁조정 결정 유형	16
[표 3] 연도별 분쟁조정 데이터 유형별 현황	17
[표 4] 연도별 분쟁조정 데이터 내용별 현황	18
[그림 1]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절차	11
[그림 2] 분쟁조정 현황	14
[그림 3] 조정안 내용 현황	14
[그림 4] 조정 성립 현황	15
[그림 5] 조정 불성립 현황	15
[그림 6] 분쟁조정 데이터 유형별 현황	17
[그림 7] 분쟁조정 데이터 내용별 현황	18
[그림 8] 분쟁조정 쟁점 현황	19
[그림 9] 비공개정보 쟁점 현황	19
[그림 10] 상담 데이터 유형별 현황	20
[그림 11] 상담 내용별 현황	20
[그림 12]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 현황	21
[그림 13] 상담 이용기관별 현황	21
[그림 14] 공공기관 상담내용 현황	22
[그림 15] 이용자 상담내용 현황	22



최근 우리 사회는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정부나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수집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여서 데이터 활용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15년, 2017년 연속해서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현장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지자체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기도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출범하였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4년간 96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면서 부동산 가격정보, 사업자정보, 자동차 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571건의 상담·컨설팅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 및 제공방안에 대해 조언하고, 공공데이터 이용자에게는 공공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의 조정 및 상담·컨설팅 내용을 정리하여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사례의 경우 사건의 쟁점 및 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공공데이터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데이터의 합리적인 제공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공공데이터 제공기관 및 이용자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헌신해주신 분쟁조정위원님,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 해 완

I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 소개



-
1.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
 2.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3.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절차
 4.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현황
 5. 공공데이터 관련 상담·컨설팅 현황
-

I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 소개

1.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2.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3년 10월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 25명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내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함.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건 처리 외에도 공공기관 데이터 담당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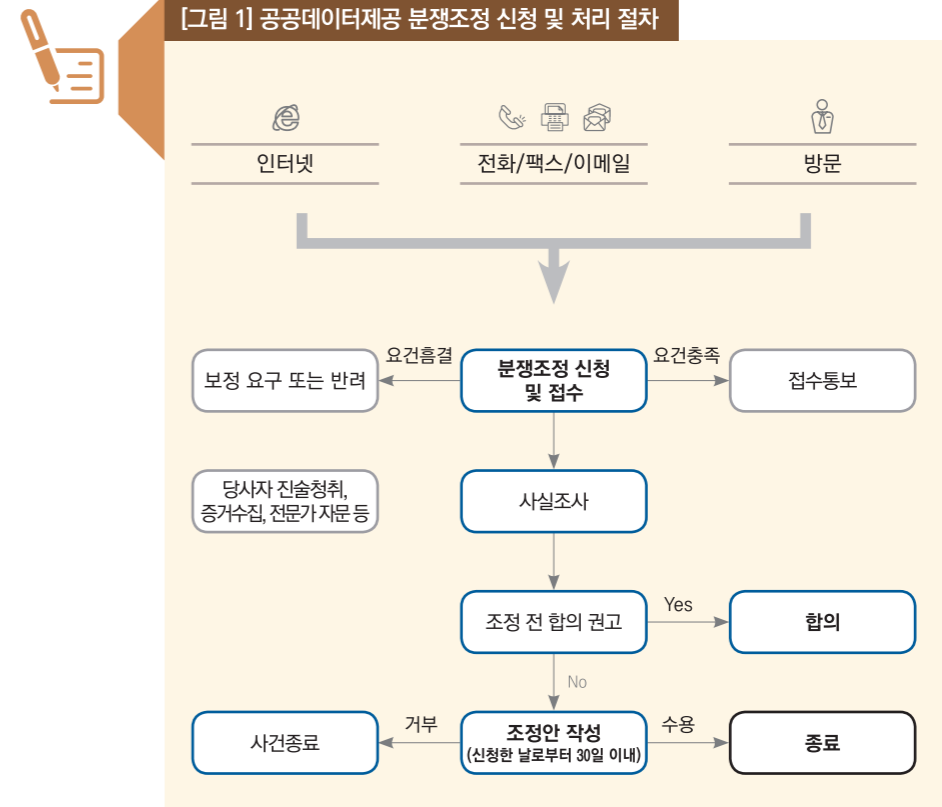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데이터법)

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절차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 중이던 데이터를 제공중단하였을 경우 분쟁조정 신청 가능함.



① 신청 접수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중단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신청인이 직접 신청 또는 대리 신청
- 홈페이지(www.odmc.or.kr) · 전자우편(odmc@nia.or.kr) · FAX(02-6191-2193) · 우편 · 방문 접수
- ※ 조정신청 접수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 작성

② 신청사실 통보

- 신청사건 접수 시 피신청인에게 접수사실 통보

③ 사실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

- 사건담당자가 자료 수집을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 완료 이후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④ 조정 전 합의 권고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애 앞서 당사자 간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합의 권고
- 당사자 간 합의 성립 시 사건 종결

⑤ 조정부 회의 개최

- 조정 전 합의가 결렬되거나 중한 사건인 경우 조정부 회의 개최
- 신청인·피신청인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 조정부에서 양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⑥ 조정의 성립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수락서에 기명날인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조정 성립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그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거부로 간주

⑦ 효력의 발생

- 양 당사자의 조정결정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2조 제9항의규정에 따라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4.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현황

분쟁조정 처리 현황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총 96건임.

분쟁조정 결정유형으로 살펴보면, 반려결정 9건, 거부결정 5건, 조정신청 취하가 13건이며, 실제 조정처리는 65건으로 사전조정 23건, 조정성립 31건, 조정 불성립 11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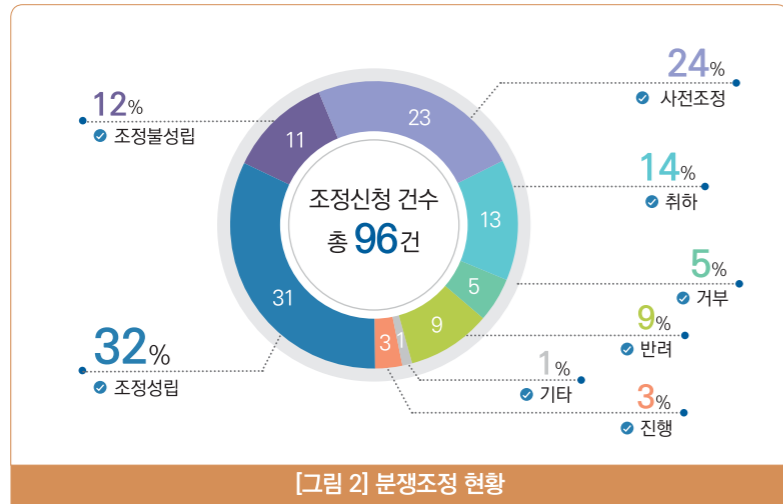
[표 1] 연도별 분쟁조정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조정절차 종료	반려결정	3	0	5	1	9
	거부결정	3	1	1	0	5
	조정신청취하	1	4	7	1	13
	사전조정	1	7	2	13	23
조정성립	조정안수락	9	7	6	9	31
조정불성립	조정안불수락	0	3	5	3	11
진행중		-	-	-	4	4
계		17건	22건	26건	31건	96건

※ 2017.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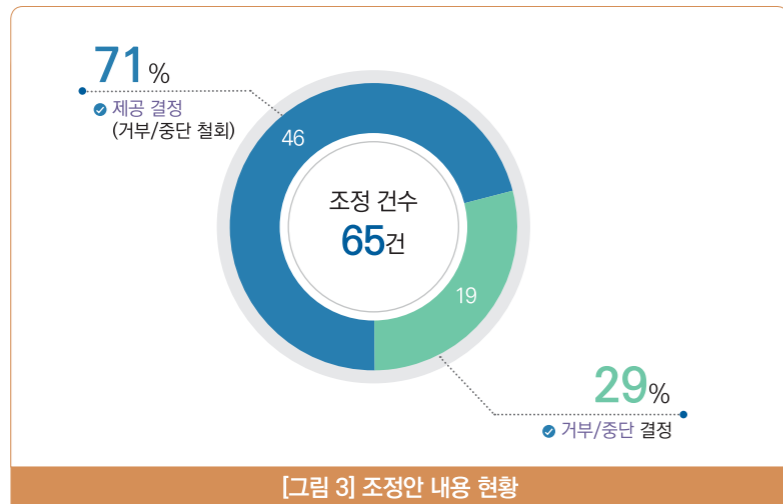
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조정성립,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되며,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안에 따라야 함.

그러나 실제로는 6개의 공공기관(대법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보험공단)이 조정안에 따르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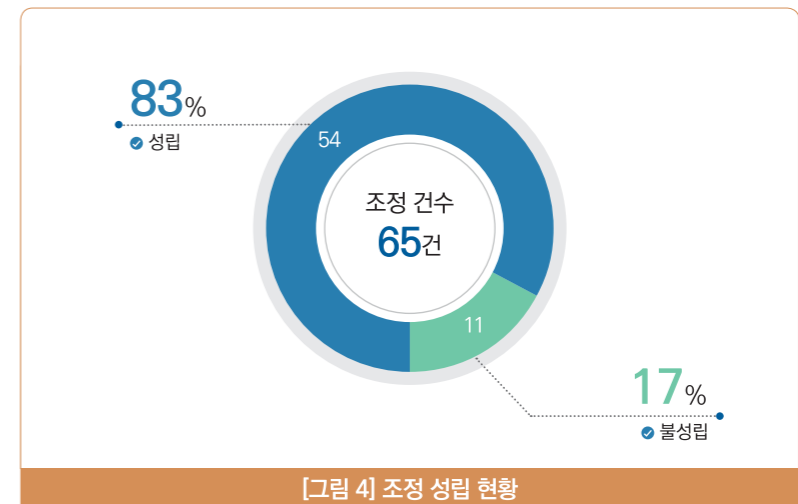
[그림 2] 분쟁조정 현황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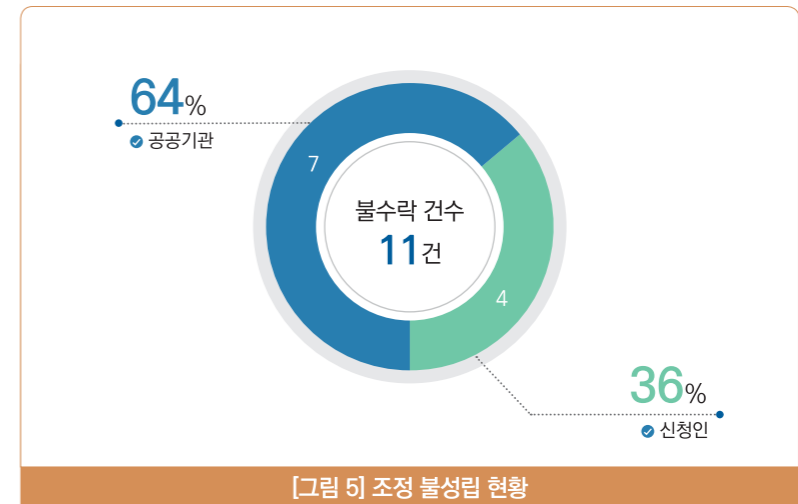
[그림 3] 조정안 내용 현황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그림 4] 조정 성립 현황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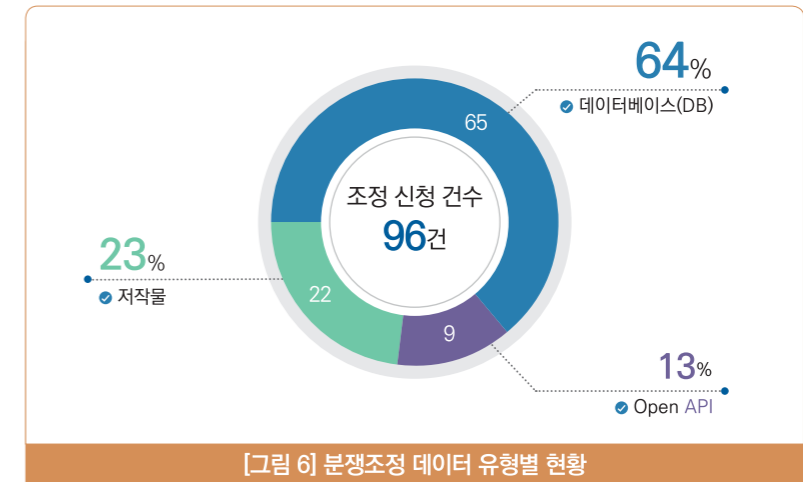
[그림 5] 조정 불성립 현황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표 2] 분쟁조정 결정 유형		
구분	결정 유형	내용
조정절차 종료	반려 결정	- 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거부 결정	- 법령상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조정신청의 내용이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사실조사 비협조 및 자료제출 미이행 등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조정신청 취하	-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취하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녹취하여 음성 파일로 보관
조정절차 종료	조정 전 합의	- 공공데이터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 가능 - 양 당사자가 조정부 회의 전에 위원회의 합의 권고에 따라 합의할 경우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 ※ 조정 전 합의는 조정부 회의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의 절차이고,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사전 합의를 하는 경우는 사전조정
조정성립	조정결정 수락	조정부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 성립, 이 경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조정 불성립	조정결정 수락거부	조정안을 어느 한 쪽 당사자만이라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정절차 종료

분쟁조정 데이터 유형별 · 내용별 현황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사건을 데이터 유형별로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DB)가 64%로 가장 많고, 저작물은 23%, Open API는 1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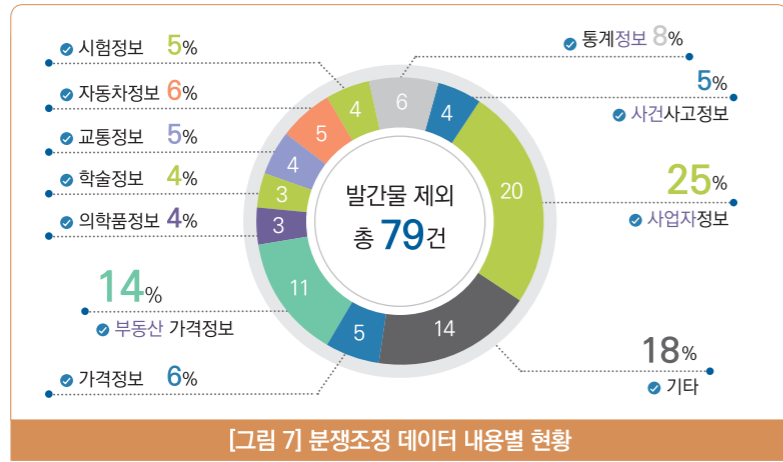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표 3] 연도별 분쟁조정 데이터 유형별 현황					
데이터 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DB	12	10	16	27	65
Open API	1	2	5	1	9
저작물	4	10	5	3	22
계	17건	22건	26건	31건	96건

※ 2017. 12. 31 기준

단순 발간물을 제외하고 데이터 내용별로 분류하면, 사업자정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가격정보, 통계정보, 자동차정보, 가격정보 순이며, 기타는 학교정보, 노동조합정보, 3D데이터, 봉사참여정보 등이 있음
사업자정보가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한 신청인이 자동차정보업체정보를 여러 지자체와 해당 업무 소관부처에 요청하여 거부된 사건(16건)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중복을 제거하면 부동산가격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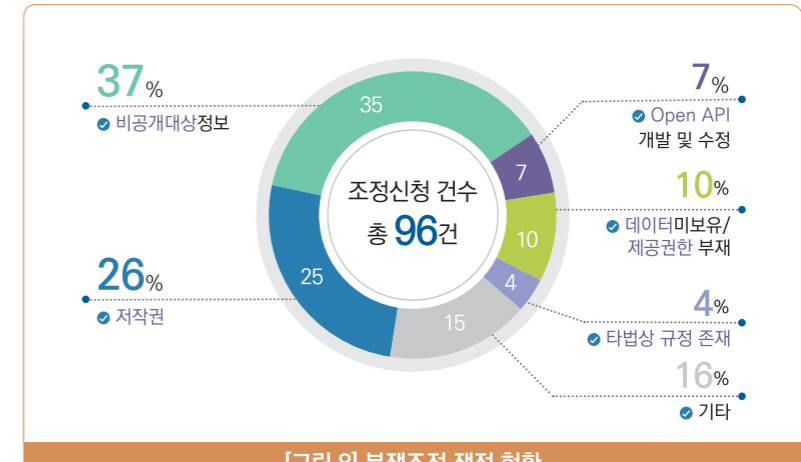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데이터 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사업자정보	0	2	1	18	21
부동산가격정보	2	4	3	2	11
통계정보	0	2	2	2	6
자동차정보	1	1	1	2	5
가격정보	3	0	1	1	5
교통정보	1	0	3	0	4
사건사고정보	0	2	2	0	4
시험문제	0	3	0	1	4
학술정보	2	0	2	2	6
의료/의약정보	2	0	2	0	4
기타	2	1	4	2	9
발간물	4	7	5	1	17
계	17건	22건	26건	31건	96건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분쟁조정 쟁점 현황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주요 쟁점은 비공개대상정보 여부가 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제3자의 저작권 포함 여부 26%, 데이터 미보유/제공 권한 부재가 10%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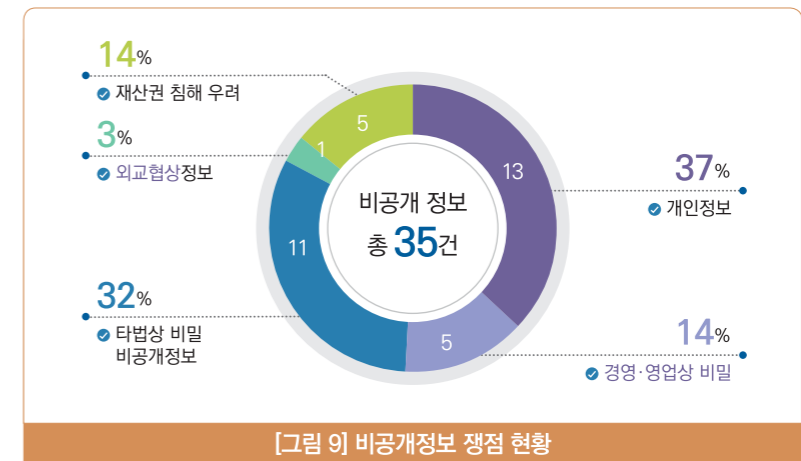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중에서는 개인정보가 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타법상 비밀·비공개정보가 32%,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와 재산권 침해 우려 정보가 각각 14%를 차지함.

타법상 비밀/비공개정보에는 과세정보(국세기본법), 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 절차전자화촉진법), 통계법상 비밀정보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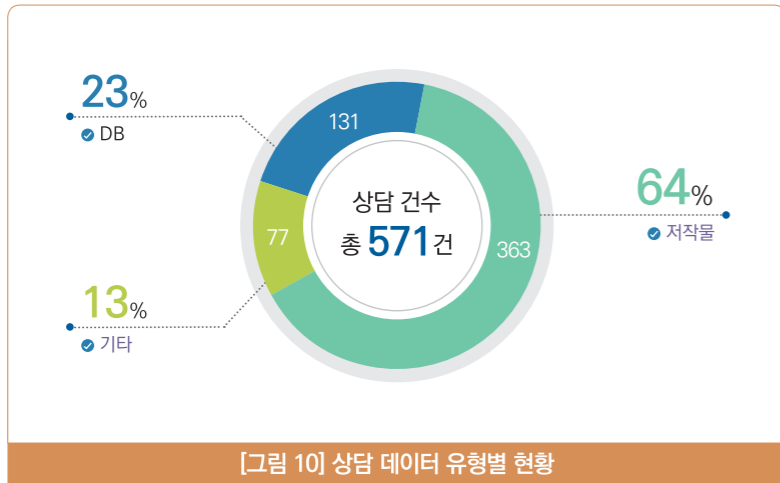
본 쟁점 현황은 한 사건에서 여러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주요 쟁점으로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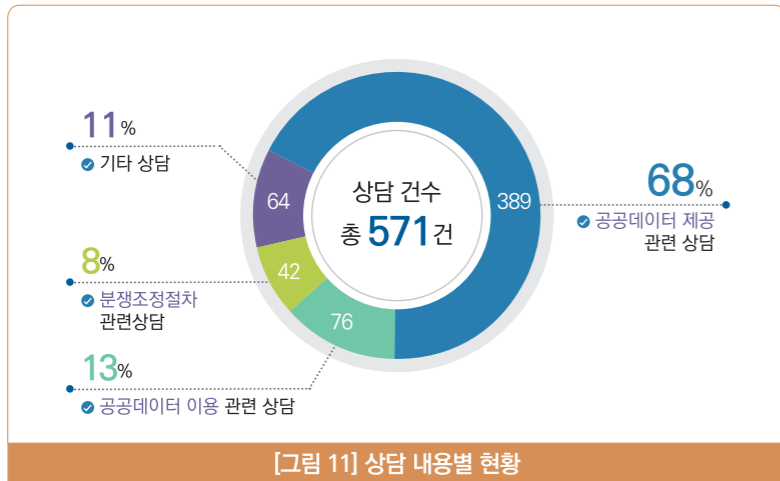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5. 공공데이터 관련 상담·컨설팅 현황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571건을 실시함. 상담 데이터 유형은 데이터베이스(DB) 64%, 저작물 23%이며, 상담 내용은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등 제공 관련이 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이 13%, 분쟁조정절차 관련은 8%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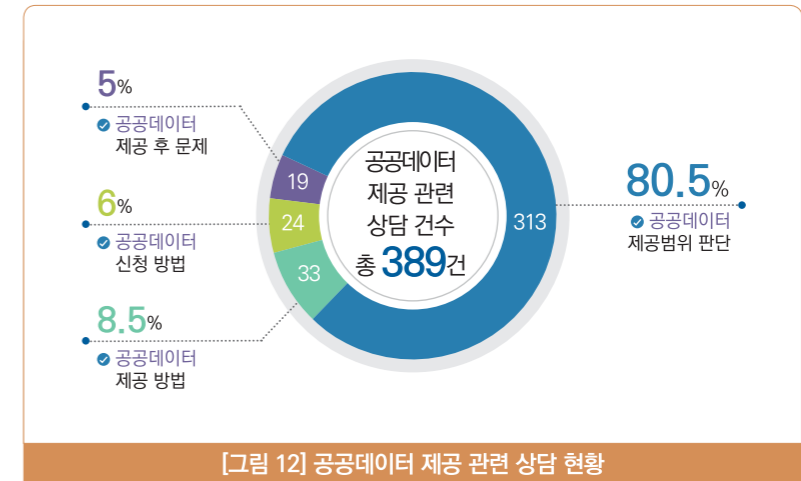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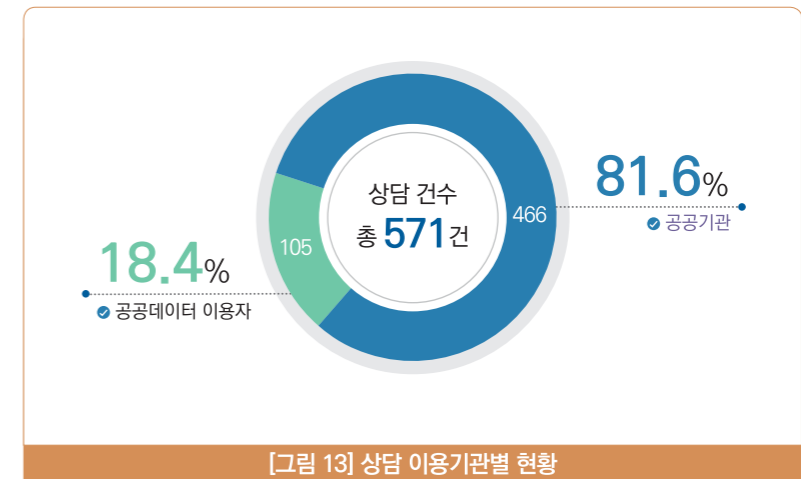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 세부 내용은 공공데이터 제공 범위 판단이 80.5%로 가장 많고, 공공데이터 제공 방법이 8.5%, 공공데이터 신청 방법이 6%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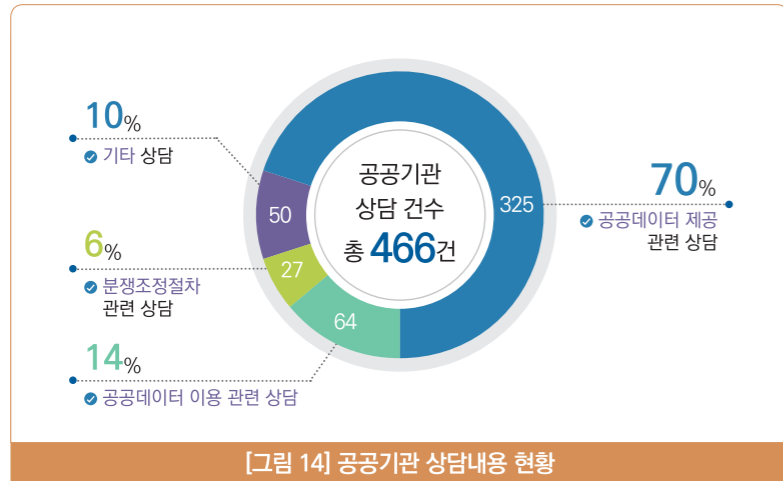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상담 대상은 공공기관이 466건으로 전체 81.6%,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105건으로 18.4%에 해당함. 상담 대상별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466건 중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등 관련이 70%, 공공데이터 이용 조건 등 이용 관련이 14%, 분쟁조정 절차관련이 6%를 차지함.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그림 14] 공공기관 상담내용 현황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공공데이터 이용자 상담은 105건으로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처분의 타당성 등 제공 관련이 6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절차 관련이 15%, 공공데이터 이용 범위 등 이용 관련이 12%를 차지함. 공공기관이 충분한 검토 없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거부 한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됨.



[그림 15] 이용자 상담내용 현황

※ 2014. 1. 1 ~ 2017. 12. 31 기준

II

분쟁조정사례



1.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2.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3. 취하, 반려, 거부 사건

II 분쟁조정사례

1.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1)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분쟁조정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약제비 현황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포럼, 공청회 등의 발표 자료 목적으로, 2014년,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 실제로 지급한 약제비(약품비, 조제비, 의약품 관리료 등)의 총액과 2014년, 2015년 약품비의 상한가 총액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형태대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 결정함.

② 쟁점

가. 이 사건 데이터가 공공데이터인지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데이터베이스형태의 자료 또는 정보이므로,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나. 이 사건 데이터 중 약제비 총액 데이터 보유·관리 여부

이 사건 데이터 중 '2014년,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 실제로 지급한 약제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약품과 관련한 비용(약품비, 조제비, 의약품 관리료 등 포함)'을 뜻함.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지급 절차(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등)를 보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요청하면,

심사평가원이 비용 적정성 여부를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함. 공단은 이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비용 지급하게 되어 있음.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적정 진료비 총액을 제공 받고 있으며, 해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공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건대, 피신청인은 약제비를 포함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및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이 사건 데이터 중 약품비 상한가 총액 데이터 보유·관리 여부

약품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엑셀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신청인이 요청한 이 사건 데이터 중 '2014년, 2015년 약품비의 상한가 총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③ 결과

가. 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2008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약품비의 총액'을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조정부 회의를 통하여 양 당사자 간 필요한 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합의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토록 조정함.

다만, 구체적인 제공 방법 및 상세 항목 등은 2016년 4월 중으로 당사자와 유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나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함.

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유하는 DB의 구조상 약제비를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수락거부하였으나, 이후 신청인과 제공범위에 관해 추가로 협의하여 일부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함.

(2)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데이터

1 개요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자동차 관련 부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자기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정보 및 스펙정보(타이어 및 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피신청인(국토교통부) 등록(API) 및 자동차 인증 시 제출하는 제원정보를 신청함.

그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등록정보' 관련 요청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자동차 제원정보'는 제원을 생성하는 주체인 제작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공이 어렵다는 거부통지를 받고 분쟁 조정을 신청함.

2 쟁점

가. 자동차 등록 정보의 수집·관리 근거 및 범위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 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을 관리하여 재산권의 확보 및 체계적인 자동차 관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나. 이 사건 데이터 관리 현황

피신청인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 업무 및 업무 총괄을 맡고 있으며, 지자체(17개 시·도, 232개 시·군·구)는 일선 시·군·구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업무 및 관리사업자 관리 등 총괄 지도·감독, 자동차 신규·변경·이전·말소 등록 등 전체 자동차 관련 민원 업무 처리를 담당함.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설치·운영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 검사, 구조변경, 자동차의 기술검토, 안전검사 및 제원관리 및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 관리·운영을 맡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자동차의 제작에서 등록, 운행, 말소까지 전체 생애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7월부터 운영되어 현재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등이 사용중임.

다. 2015년도 유사 조정사건 개요 및 조정 결과

1) 개요

신청인은 고객 맞춤형 통계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내 자동차 등록 월간자료*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사업 종료 여부를 확인한 후 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 등록정보(접수테이블 기준 등록자료) 중 하기 월간자료(2015년 7월~), 제원정보, 제작업체정보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요청함.

2) 조정 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내 월간 자동차 등록자료(신규, 이전, 말소, 저당, 구조변경) 및 제원정보, 제작업체번호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위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 등 문제되는 부분은 비식별화 조치 또는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등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5년 9월 말까지 구체적인 데이터의 제공범위, 제공 방법, 제공 시기, 이용 수수료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협의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협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연장 사실 및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상대방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정 결정 이유

- 이 사건 데이터에 관해 피신청인이 거부사유로 들었던 관련 사업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거부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다른 제공 거부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 다만 이 사건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바,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조치 또는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등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그 외에 구체적인 제공 범위 및 제공 시기(월간 발생 데이터므로 제공 주기 등에 관하여 협의 필요), 제공 방법, 이용 수수료 등에 관해서는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

4) 조정 결과에 따른 당사자 간 상세 합의 내용

- 자동차 등록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함.
- 자동차 제원정보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들이 구성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대외개방에 동의한 데이터만 제공하기로 합의함.
 - ※ 단, 출시되지 않은 자동차의 제원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제공 대상에서 제외함.
 - 위 데이터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단에서 매 월 마다 신청인이 USB로 직접 수령하기로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 제17호에 따라 정해진 데이터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됨.

3 결과

가. 조정내용

피신청인은 자동차 제원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 및 항목, 방법, 주기, 이용 수수료 등에 관해 신청인과 2016년 6월 말까지 협의* 하고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구체적인 협의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협의 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를 참여시키도록 함.

나. 조정결정 이유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2015년도에 유사한 데이터에 관하여 이미 한 차례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어, 국토교통부가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 제원정보의 구체적인 제공범위 및 항목 등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필요함.

자동차 제원정보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들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는 정보로 제작사들의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세 항목 및 범위를 정하는 협의를 할 때에 자동차 제작사들 대표로써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를 참여시키도록 함.

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위와 같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료함.

(3) 아산시 및 천안시 경매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참고 자료 수집 목적으로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산시 및 천안시 경매정보(본번 및 부번을 포함한 주소, 지목, 면적, 용도, 감정가, 낙찰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대법원)으로부터 공공데이터법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동법 제26조 제3항의 '공공데이터의 생성, 변형, 가공, 요약, 발췌 의무 없음'을 이유로 제공거부통지를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가. 대법원 경매정보가 공공데이터인지 여부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매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항목(지번을 포함한 상세 주소, 지목, 면적, 용도, 감정가, 낙찰가) 중 낙찰가 외에는 경매 대상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신청인인 대법원이 경매정보를 연도별, 법원별, 지역별(읍면동 단위까지 한정), 용도별로 매각통계를 내어 공개하고 있으며, 엑셀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대법원은 경매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짐.

따라서, 대법원 경매정보는 법원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로서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나. 이 사건 데이터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요청한 항목 중 '본번 및 부번을 포함한 주소(이하 '상세 주소'라 함)'의 경우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또한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경매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이유는 입찰을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매각이 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더 이상 공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상세주소 단위의 낙찰가'의 경우 공고 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결국 '상세주소'는 개인정보로서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낙찰가'는 통계정보로 공개되고 있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낙찰가'와 유사한 실거래가의 경우에도 지번을 삭제한 법정동 단위까지의 주소를 기반으로 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음.

다. 데이터의 분리·제공

피신청인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을 들어 신청인의 요청대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까지 동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공공데이터법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도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에 비공개 대상정보, 제3자의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제공토록 하고 있음.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경매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고 비공개 대상정보 등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피신청인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한 후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신청인이 요청한 항목들을 발췌하여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없다면 신청인이 요청한대로 이 사건 데이터를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결과

가. 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 대상 지역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매정보를 제공한다.

- 대상지역 : 천안시(서북구, 동남구), 아산시(탕정면, 배방읍)
- 정보항목 : 지역(읍면동리, 지번제외), 지목, 면적, 용도, 감정가, 낙찰가

다만, 신청인은 대상 지역을 필요 최소한으로 요청하고, 피신청 기관은 대상 정보 중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있는 상세주소(지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공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신청인이 요청하는 정보는 소송기록이라기보다는 대법원이 전산관리하고 있는 경매정보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소송기록 열람청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여 짐.

다만, 신청인은 대상 지역을 필요최소한으로 요청하고, 피신청인은 대상 정보 중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상세 주소(지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공토록 함.

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위와 같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료함.

(4)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데이터

1 개요

신청인이 ISO 26000에 따른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성 분석에 활용하고자 피신청인(고용노동부)에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쟁점

가.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수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담당자에 따르면 hwp나 pdf 형식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자료이므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통계법상 비밀 해당 여부

통계법 제33조 제1항은 통계를 목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중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을 비밀로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데이터는 고용노동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조합법에 따라 수집하는 자료로서 통계자료가 아니라 행정자료로 보이므로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간 공개되어 왔던 점, 정책연구 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아직도 이 사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점, 지자체에 따라서는 해당 데이터를 개방하는 곳도 있어 비밀성이 부족한 점, 오랜 기간 공개되었음에도 이제까지 고용노동부에 제기된 분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비공개로 관리해야 하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려움.

또한 이 사건 데이터가 단체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개방에 따른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공개정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같은 고려 없이 비공개대상정보라 판단한 피신청인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음.

이 사건 데이터에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명부의 '항목별'로 비밀보호의 이익과 공개의 이익을 형량하여 공개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명부를 일괄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라 단정할 수 없음.

3 결과

가. 조정내용

이 사건 데이터 '노동조합명부'는 정부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이미 공개되고 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비밀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제출 받은 노동조합현황을 책자로 제작하여 각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있으며, 관련 책자 파일이 정부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되어 있음.

또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데이터로 보기 어려움.

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유 소명없이 위와 같은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료함.

(5) 한국연구재단, 한국 연구자 데이터

1 개요

신청인이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피신청인(한국연구재단)의 KRI 한국연구자정보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쟁점

가.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47조, 학술정보법 제14조 등을 근거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다만, 이 사건 데이터에는(연구자등록번호, 성명, 이메일, 소속, 연구분야, 세부전공명, 논문실적, 학술활동) 연구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나. 이 사건 데이터 제공에 대한 연구자의 이용허락 여부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인 연구자들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이미 동의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에 한해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 사건 데이터에 포함된 연구자들이 동의한 제3자 제공 조건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타 부처의 연구사업관리* 업무지원 또는 연구자 정보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것임.

* 제공받는 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특정됨

** 제공받는 자는 인사혁신처 등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전문가 활용 및 시험출제위원, 평가위원 등 연구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자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의 업체가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연구자들이 동의한 제공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다. 연구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신청인은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미 정보공개를 동의한 연구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로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된 형태와 대상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8.17.선고 2014다235080판결).
 이 사건 데이터는 연구자들의 연구사업지원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고, 연구자들이 전문가, 시험출제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수집 및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자들이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에 자신들의 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고 한국연구재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조건에 동의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KRI 웹사이트의 회원만 연구자 정보의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며 그 중 일반회원은 연구자회원의 일부 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가 일반 공중에 완전히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KRI 웹사이트에서 정보공개에 동의한 연구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③ 결과

가. 조정내용

이 사건 데이터인 'KRI 제공 한국 연구자 정보'에는 연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연구자들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다만,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 정보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나 연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해당 연구자들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은 타당함.

다만, 피신청인이 사건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근거법인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 및 학술진흥법 제44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연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정보를 관련 학계 및 산업계에 알려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 사건 데이터 중 학술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 및 활용에 따른 공익적 이익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연구자들에게 최대한 동의를 받아 정보를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따라서, 피신청기관은 정보제공의 목적을 다양화하고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의 범위와 제공항목 등을 세분화하여, 연구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및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권고함.

다. 조정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조정안을 수락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종료함.

(6)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 데이터

1 개요

신청인은 부동산 가격제공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피신청인(국토교통부)에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정보(동·호수 포함)'를 제공신청하였으나,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및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DB의 전면 공개가 어렵다며 동·호수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쟁점

가.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른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관리하며 전자화되어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나. 이 사건 데이터의 과세정보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비밀로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 담당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의문시 된다는 점과 해당 법령에 대한 기획재정부 법령해석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라 보기 어려움.

기획재정부 법령 해석

과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데이터 등에 대한 분쟁조정 사건(2015-021)에서 국세청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골프회원권, 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 가액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과세정보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령해석

다. 이 사건 데이터 공개 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 정보 해당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공동주택 거래담보 대출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 전송, 불법적인 채권 추심, 사이버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데이터 개방과 위와 같은 불법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라. 이 사건 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동·호수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라고 주장하나,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며, 동·호수 정보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정보는 부동산공시법 제6조에 따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이 사건 데이터는 비공개대상정보라 보기 어려움.

3 결과

가. 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현재 피신청인이 개방 중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총 정보 포함)에 '동 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상세주소에 해당하는 '호수 정보'는 추후 피신청인의 내부 검토를 통해 개방 시기를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이 사건 데이터는 공시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미 조회·열람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며, 공개 시 국민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려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다만,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의 전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동 정보'의 추가 제공을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함.

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위와 같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종료함.

(7) 국방부, 군매점(PX) 상품 데이터

1 개요

신청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국군 장병에게 편지, 사진, 군매점 상품 교환권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매점 상품 관련 데이터를 제공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국방부)이 납품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쟁점

가.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국방부가 군인복지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사항』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10.23.선고 2007두1798판결), 그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0.12.23.선고 2008두13101판결).

이 사건 데이터 항목 중 상품명 등 상품 관련 정보(상품명, 납품업체,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는 납품업체의 비밀이라기보다는 상품 판매 시 소비자인 군인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인 점, 전파성이 높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데이터는 영업상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거나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데이터로 보기 어려움.

* 일반 공중이 아니라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일반인 회원가입도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가입 대상 여부를 묻거나 심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누구나 가입 후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관리되고 있다 할 것임

※ 방위사업청 및 각 군이 국내에서 조달하는 군수품에 대한 계약정보(계약기관, 수요기관, 계약금액, 물품명, 계약업체명 등)가 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개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함

그러나, 이 사건 데이터 항목 중 ‘할인율, 판매수량 및 매출액’ 정보는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 간의 납품계약 체결 또는 재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정보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업 활동에 유리하다 할 수 있으며, 국군복지단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국군복지단 내에서도 관련 직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경영·영업상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이 사건 데이터는 영업비밀성 및 관리의 정도가 서로 다른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일괄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3 결과

가. 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정보는 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로서 PX 이용자에게 이미 노출되어 있으며 국군복지포털 등을 통해 군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 중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정보는 납품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공할 것을 권고하며, ‘할인율, 판매수량, 매출액’ 정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납품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제공이 어려움.

다. 조정 결과

신청인은 동 조정을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여전히 해당정보가 납품업체의 영업상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며 업체 몇 곳을 표본삼아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비공개를 희망했다는 이유로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료함.

(8)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자동차정비업체 등록 데이터

1 개요

신청인은 자동차정비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앱서비스 개발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피신청인(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게 자동차정비업체 등록현황* 데이터를 요청하였으나, 몇몇 지자체는 미보유 데이터,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제공권한 없음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함.

* 사업장명, 소재지주소,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정비업유형(종합/전문/소형/원동기), 등록일자, 영업 상태(영업/휴업/폐업), 면적, 우편번호

2 쟁점

가.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나. 경영상·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신청인 지자체는 이 사건 데이터 중 '면적'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비업체가 특정한 범위의 고객들만 상대한다거나 외부에서 접근이 금지된 영역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업장에 방문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대략적인 규모를 알 수 있음.

따라서 사업장의 면적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우며,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시 정비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결과

가. 조정내용

피신청인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나아가 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한다.

또한, 향후 동일 데이터에 대한 제공 또한 요청 시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일괄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함.

피신청인 지자체는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고 있는 미제공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피신청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정비업체에 관한 등록 업무가 타 행정청(시·군·구)에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자체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관련 지자체가 해당 데이터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제공하는 등 신청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 국토교통부가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련 정보시스템에 이 사건 데이터가 관리 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일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과거의 사례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도로이정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 바가 있음.

피신청인 지자체는 이 사건 데이터를 정비업체의 영업상 비밀, 데이터

미보유를 이유로 일부 제공거부 하였으나,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조정 결과 : 일부 조정 성립

피신청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생산·관리하는 데이터를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으며, 각 지자체별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수요자의 관점에서 타당하다는 이유로 조정안 수락을 거부함.

피신청인 지자체는 대부분 조정안을 수락하고 데이터를 제공하였으나, 1개의 지자체(대구광역시 동구)는 여전히 정비업체의 면적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정안 수락을 거부함.

(9)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정보 Open API

①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공정거래위원회)이 제공 중인 통신판매사업자정보 Open API를 이용하여 통신판매자 회원 가입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제공 중인 Open API에 통신판매업자의 연락처를 추가하여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데이터는 개인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거부통지 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통신판매업자의 연락처 정보가 비공개정보(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데이터인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는 전자상거래법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될 수 있는 정보로서, 통신판매업체 대표 개인의 정보가 등록되었다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비공개대상이라 보기는 어려움. 다만 공개가 예정된 판매업자의 정보라도 개인 휴대전화와 같이 민감도가 높은 정보는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대국민 개방여부는 물론, 보안유지 등 특정 조건 하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③ 결과

신청인이 현행 Open API에 이메일을 추가하는 정도로도 원하는 기능이 구현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현행 통신판매업자 API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여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사전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함.

(1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① 개요

신청인은 가정폭력의 범죄 원인 및 피해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해 피신청인(여성가족부)에게 3년마다 실시하는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요청하였으나, 심층분석연구 진행을 이유로 원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부 결정을 받고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신청인은 최종적으로 연구가 끝난 보고서(2016년)의 기초가 된 통계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현재(2017년) 심층분석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데이터 제공이 불가하다는 결정은 납득할 수 없으며, 데이터 제공을 요청.

피신청인 여성가족부는 통계청의 품질관리진단 결과 '조사설계(1년)-기초통계보고(1년)-심화분석(1년)' 실시 권고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바탕으로 심층분석연구(~'17.12.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를 추진 중이며, 해당 데이터 공개 신뢰도 검증 완료 후 2018년 초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확정하여 공개할 예정이므로 잠시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함.

③ 결과

당사자 진술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뢰도 검증 완료 후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데이터 제공거부 경위를 양해함으로써, 더 이상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2) 제3자 권리 관련 분쟁조정

(1)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 시리즈

1 개요

신청인은 출판 및 전자책 제작을 목적으로 피신청인(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 시리즈 중 4종*의 원문 pdf파일을 제공신청 하였으나, 해당 보고서에 포함된 인터뷰 대상자들에 관한 권리(초상권, 저작권) 침해 우려로 제공거부통지를 받고 분쟁조정을 신청함.

* 광고·홍보학 편, 교육학 편, 국어국문학 편, 도시·지역·지리학 편(총 4종)

2 쟁점

가.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주요업무인 진로지도 및 직업 정보 제공을 위해 생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자화하여 관리 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나.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용허락 여부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므로(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사건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일반기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중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보면,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함.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고용정보원은 권리자로부터 출판 및 전자책 발간 등 상업적 이용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결과

가. 조정 내용

이 사건 데이터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출판 및 전자책 발간 등 상업적 이용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공이 불가하다.

나. 조정결정 이유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임(제17조제1항 제2호).

- 해당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체결된 용역계약을 검토한 결과, 발주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외에도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출한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여부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공동저작권자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은 해당 데이터를 제3자가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동의 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이에 따라 이 사건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위와 같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종료함.

(2) 문화체육관광부, 유원시설업 업무 매뉴얼

① 개요

신청인은 도서제작 및 판매를 위해 피신청인(문화체육관광부)에게 유원시설업 업무 매뉴얼 pdf 파일을 신청하였으나, 저작권법 및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공거부결정을 받고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신청인은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출판을 통해 해당 정보를 널리 알리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는 유원시설업체 및 관련 분야 공무원을 위한 업무매뉴얼로써,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유원시설업 사업체가 작성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이 중 유원시설업 사업체가 작성한 부분에는 공공기관 아닌 제3자의 저작권 및 초상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공이 불가함.

③ 결과

가. 합의 권고 내용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에 포함된 제3자 권리정보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한 제공이 불가하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나. 합의 권고 이유

공공데이터법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7조 제1항).

이 사건 데이터에는 공공기관 아닌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공이 불가하나, 공공데이터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위와 같은 조정전 합의권고안에 동의하여 사건을 종료함.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모가 먼저 알고 아이에게 알려주는 메이커 교육

① 개요

신청인은 도서제작 및 판매를 위해 피신청인(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간한 「부모가 먼저 알고 아이에게 알려주는 메이커 교육」의 PDF 파일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시리즈는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유료로 판매되는 도서이므로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신청인은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도서가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로 제공거부하는 것은 공공데이터법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 주장함.

피신청인은 해당 시리즈 작성을 위하여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은 ○○출판사에 귀속되므로 출판사의 동의 없이는 영리적 목적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제공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③ 결과

사실조사 결과 민간의 출판사에 출판권이 귀속되어 있으며, 해당 출판사가 상업적 이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이 타당하며, 그 같은 사정을 신청인이 양해하여 사건을 종결함.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측정분석사 기출문제**① 개요**

신청인은 환경측정분석사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여 출판하기 위하여 피신청인(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그 동안의 기출문제 데이터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교육 및 공공목적 외 영리 목적의 문제집 출간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신청인은 공공데이터는 국민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 및 공공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이용허락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③ 결과

이 사건 데이터 관련 법령, 당사자 진술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데이터(시험문제)를 작성한 출제위원들의 허락 없이는 신청인의 상업적 이용이 불가하며, 신청인이 이를 양해하여 사건을 종결함.

(5) 산림청, 버섯도감의 사진 및 텍스트**① 개요**

신청인은 도서출판의 목적으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내 버섯도감 사진 및 텍스트를 제공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산림청)이 해당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가 아니며, 관련 API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를 조회하여 사용하라는 취지로 반려 통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신청인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제공목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므로, 해당 데이터(사진 및 텍스트)를 제공해 주기를 요청함.

피신청인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내 버섯 도감 사진은 수집·구축된 시기에 따라 권리취득여부가 다르며, 2015년 이후 구축된 데이터 1,210점에 대한 권리는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③ 결과

당사자 진술 및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데이터 중 2015년 이후 수집된 1,210건의 데이터는 제공가능하며,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 사건을 종결함.

(6) 국립농업과학원, 버섯은행의 사진 및 텍스트

① 개요

신청인은 버섯 관련 도서를 출판하기 위해 피신청인(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버섯은행 사이트 내 버섯의 사진(이미지)과 설명자료(텍스트)를 제공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는 타 출판사의 도서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이미지 등 관련 파일을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신청인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는 민간의 영리적 활용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 등의 문제가 없다면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함.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의 출판사에 출판권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만료되어 제공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③ 결과

당사자 진술 및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텍스트 및 이미지 데이터는 신청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가능하며, 이 중 이미지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하고, 텍스트 데이터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이용하기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함.

(7)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념물 3D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온라인 3D 실감형 전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피신청인(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념물 3D데이터(선물류)를 제공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는 공예품, 예술품 등에 해당되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이유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신청인은 해외 귀빈들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인데 공공데이터로 제공이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함.

피신청인은 해당 선물은 증정받은 것으로서 국가가 보유한 것이 맞으나, 해당 선물에 포함된 저작권은 저작자의 것이므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③ 결과

당사자 진술 및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데이터는 공예품, 조각 등 미술저작물이 다수 존재하여 제3자 저작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이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제공거부경위를 신청인이 양해하여 사건을 종결함.

3) 기타 분쟁조정

(1)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정보체계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

1 개요

신청인은 부동산 감정평가업무를 진행하며 피신청인(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정보체계*를 이용해 온 자로서, 어느 시점부터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의 제공범위가 축소되고 검색방법이 변경되어 수요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며 개선을 요구함.

*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선례정보,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 그 밖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2 쟁점

가. 감정평가정보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감정평가정보체계에서 제공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취득·관리하며,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나. 피신청인의 조치가 공공데이터법상 부당한 제공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조정부에 출석하여 피신청인의 조치로 인해 실제 제공받는 데이터의 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데이터 제공중단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다만 피신청인의 조치로 인해 데이터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것이라 주장하여 부당한 제공중단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3 결과

가. 조정내용

피신청인은 감정평가 정보체계 보안강화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사건 데이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건의하여 협의,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피신청인의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을 받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목적 외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다만, 이러한 조치가 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건의하여 협의·개선할 것을 권고함.

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위와 같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료함.

(2) 한국연구재단, KCI 제공 학술참고문헌(Open API)

1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한국연구재단)의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 서비스(KCI Open API)에서 논문 검색 시, 검색결과에 해당 논문이 인용하고 있는 참고문헌정보를 함께 출력하도록 Open API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 KCI DB 구조의 특성상 신청인의 요구대로 Open API를 수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스템 부하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쟁점

가.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여부 및 제공 가부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이 사건 데이터 한국연구재단의 KCI 학술논문 참고문헌 데이터는 학술진흥법 및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피신청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로 DB로 전자화하여 구축·관리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이 사건 참고문헌 데이터는 학술논문의 저자, 제목, 학술지명, 발행년도, 페이지 등 학술문헌정보에 관한 것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나 제3자의 권리포함정보가 아니므로 공공데이터 제공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2014년도의 분쟁조정사건에서 KCI 참고문헌 DB를 제공하도록 조정한 바 있음.

나. 피신청인에게 해당 Open API를 수정·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API 수정·제공에 과도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데이터의 이용자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국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위해 수정·제공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3 결과

가. 조정내용

현행 KCI 시스템의 구조와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요구한 방식으로 Open API를 수정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신청인은 기술적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KCI 학술참고문헌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되, 그 제공범위 및 방식은 양 당사자 간 협약 체결 과정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양 당사자는 위 협약의 내용에 사업적 이용의 제한이나 부당한 조건의 부과 등 공공데이터 제공취지에 위배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할 것을 권고함.

나. 조정결정 이유

신청인의 Open API 수정 요청에 대해 조사·검토한 결과 현재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구조와 기술적 특성상 신청인이 요구한 방식으로 수정·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피신청인이 현재 협약 체결 기관을 대상으로 현행 대비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데이터 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양당사자는 협약 체결을 통해 해당 데이터의 제공범위 및 방식 등의 세부조건을 정하도록 하되, 협약 내용에 사업적 이용을 제한하거나, 타 이용자 대비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등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양 당사자가 충분히 협의할 것을 권고함.

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위와 같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료함.

(3) 행정안전부, 봉사참여정보서비스(Open API)

1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행정안전부)에게 봉사참여정보서비스 Open API를 활용하여 봉사활동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Open API 결과값에 주소코드를 포함하도록 신청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거부결정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쟁점 - 공공데이터의 수정·가공 의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Open API 중 주소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경북, 경상북도 등이 혼재) 표준주소코드 추가를 요청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가공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기술적 변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정·제공이 어렵다고 주장함.

3 결과

가. 합의 권고 사항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공데이터(Open API)의 검색서비스 결과값에 주소코드가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나. 합의 권고 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또는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피신청인이 기술적 검토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수정이 용이하고, 해당 Open API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도 수정 및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함.

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위와 같은 조정전 합의권고에 동의하여 사건을 종료함.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환경방사선량률DB(Open API)

1 개요

신청인은 페이스북 메신저 플랫폼 기반의 환경기상 챗봇(ChatBot) 개발을 위해 피신청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지역별 방사선량률 정보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쟁점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신청인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비공개대상정보, 제3자 권리 포함 정보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제공거부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이 데이터는 지역별 방사선량률을 측정된 것으로 개인이 오·남용할 경우 부작용이 염려되어 제공이 어려우며, 공공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함.

3 결과

사실조사 도중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 더 이상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2.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1) 서울특별시,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1 개요

신청인은 도서 및 전자도서 제작을 목적으로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이라는 발간물 PDF 파일을 제공신청하여 피신청인인 서울시로부터 해당 파일을 제공받은 후 도서를 제작, 판매함.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도서 출판행위는 해당 발간물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 및 출판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출판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쟁점

가. 이 사건 공공데이터에 관한 권리관계

이 사건 데이터는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이라는 도서(저작물)로, 해당 도서 내지에 있는 저작권 표시에 따르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이준수(글), 박재동(글·그림)(이하 ‘저작권자들’이라 함)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저작권자들은 “도서출판 산티”와 출판협약을 맺고 해당 저작물의 「한국어 출판권과 E-book 또는 공중송신권 형태의 출판물을 포함한 출판권」을 허락하였음.

- 해당 출판권은 출간 후 5년까지이며(2015.4.6. 초판 1쇄 발행), 향후 출판권 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약 통고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3년 단위로 연장됨(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해지할 수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저작권자들은 저작물의 제목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배타적 이용을 해할 만큼 일부와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종이 서적 또는 디지털 도서의 형태로 출판권자(산티)가 아닌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해서는 안 됨.

※ 단, 종이책과 같은 형태의 표지와 본문 편집이 된 E-book이 아니고 자료집 형태의 E-Book을 서울시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 일부(회차별 연재물 포함) 혹은 전체를 표출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 다운로드 받도록 할 수 있음.

이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공공데이터에는 서울시 외에도 공공기관 아닌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출판협약서 및 서울시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나. 피신청인의 제공중단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제28조 제1항 제2호)하고 있음.

위 권리관계를 고려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이용(도서 제작 및 판매)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해당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음.

비록 서울시의 최초 제공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공중단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사건 제공중단 조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3 결과

가. 조정내용

이 사건 데이터인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출판권이 포함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해당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 공공데이터의 중단조치가 불가피함을 확인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이 사건 데이터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의 저작권 및 출판권이 포함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해당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신청인에게 제공이 가능함.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여, 신청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해당 권리자의 저작권 및 출판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제공중단 조치가 불가피함. 향후 피신청인은 공공데이터 제공 시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의 제공대상범위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이용요건 등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권고함.

다. 조정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음을 이유로 조정안을 수락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료함.

3. 취하, 반려, 거부 사건

참고

취하 : 신청인이 분쟁조정도중 신청을 취하한 경우

반려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원회가 신청을 반려한 경우

거부 : 위원회에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조정을 거부한 경우

(1) 한국철도공사, 포항역 승하차 관련 데이터(취하)

① 개요

신청인이 포항시 내 교통물류 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신청인(한국철도공사)에게 “최근 1년 간 포항시를 기종점으로 하는 승·하차 상세 내역”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주관 부서의 판단 하에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이 사건 데이터는 한국철도공사가 업무상 취득한 전자적 방식의 자료로 보이므로 공공데이터라고 볼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제공대상에 해당함.

③ 결과

사전 조정을 통해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신청인에게 월별 승하차내역을 제공해주기로 하여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함.

(2) 국토교통부, 버스정보시스템(BIS) 데이터(취하)

① 개요

신청인이 피신청인(국토교통부)에게 어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의 OPEN API 메뉴에서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버스정보시스템(BIS)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OPEN API는 추가 개발이 어렵다는 사유로 제공을 거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공공데이터로 보임.

그러나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이거나 BIS를 구축·운영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국가대중교통 정보센터(TAGO : 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와 미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가 아니므로 제공이 어려움.

③ 결과

국토교통부가 설명한 사정을 양해한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함.

(3) 법무부, 난민 인정 재신청자 관련 통계데이터(취하)

① 개요

신청인이 난민 제도 개선방안 관련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피신청인(법무부)의 난민 소송 패소자 중 난민인정 재신청자 관련 통계 데이터를 요청하였으나, 법무부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신청인이 요청한 난민 인정 재신청자 관련 통계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확인되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공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③ 결과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함.

(4) 경찰청, 내외국인 범죄 관련 데이터(취하)

① 개요

신청인은 CCTV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피신청인(경찰청)이 보유한 내·외국인 범죄사건 정보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이 사건 데이터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는 형사사법정보로서 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처리 외 목적으로는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는 정보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③ 결과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신청인이 양해하고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함.

(5) 국토교통부, 항공협정(항공자유화) 현황 데이터(취하)

① 개요

신청인은 항공사업 관련 컨설팅을 위하여 피신청인(국토교통부)에게 항공협정 현황 정보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는 상대국과의 항공협상전략이 포함된 자료들로 해당국을 포함한 외국들과의 항공협상 진행 시 협상력 약화 등이 우려되어 비공개”라는 이유로 제공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이 사건 데이터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항공협정은 국가 간의 국제항공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하여 국제항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제조약으로 외교통상부(경제협정규범과)가 관할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의 주무부처로서 항공협정에 따른 세부 운항 조건과 관련하여 항공당국간 합의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피신청인의 답변에 따르면 이 중 항공협정 전문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개되나, 양해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음.

- 양해각서의 공개를 위해 상대국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함.
- 공개할 경우 향후 외국과의 항공 관련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협상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관리하고 있음.

③ 결과

이와 같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이 더 이상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함.

(6) 한국고용정보원, 2016 직종별직업사전(반려)

① 개요

신청인은 도서 제작 및 판매를 위해 피신청인(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6 직종별 직업사전 1종 외 10권에 대하여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데이터의 신청목적이 상업적 이용을 위한 것이며, 데이터에 포함된 사진이나 폰트 등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려 통보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분쟁조정신청의 요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후 제공 거부 또는 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반려통보를 받은 뒤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제공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③ 결과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은 피신청기관의 ‘반려통보’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데이터제공 거부결정”이라는 피신청인의 처분행위가 없어 분쟁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반려결정함.

※ 현재는 반려통보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7) 경찰청, 생활안전지도 내 치안안전 데이터(반려)

① 개요

2015년 신청인은 범죄확률지도 서비스를 개발할 목적으로 피신청인(경찰청)이 보유한 “최근 3년간 전국 범죄 유형별* 범죄발생 위치, 시기 정보”에 대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공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는 신청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데이터의 개방여부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음(2015-007사건).

1년 후 신청인이 현 시점에서는 개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을 신청함.

*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도박, 성폭력, 약취/유인 등 생활안전지도 분류별

② 쟁점 – 분쟁조정신청의 요건

신청인이 최초로 경찰청으로부터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을 받은 것은 2015년의 일이고, 이 거부결정을 이유로 당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마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부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2016년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번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③ 결과

신청인이 피신청인 경찰청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분쟁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정 신청에 대해 반력을 결정함.

(8) 한국공항공사, 항공기 운항 및 주차데이터 서비스(반려)

① 개요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없이 피신청인(한국공항공사)이 개발한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를 중단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분쟁조정신청의 요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후 제공 거부 또는 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없이 피신청인 한국공항공사의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개발 중단을 요청하였으므로 본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③ 결과

신청인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정 신청에 대해 반력을 결정함.

(9) 식품의약품안전처, DUR 의약품 데이터 서비스(반려)**① 개요**

신청인이 피신청인(식품의약품안전처)의 DUR* 의약품 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중단하여 달라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함.

* DUR(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② 쟁점 - 분쟁조정신청의 요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후 제공 거부 또는 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개발 중단을 요청하였으므로 본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③ 결과

신청인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정 신청에 대해 반려를 결정함.

(10) 한국은행,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혼합소득 통계데이터(반려)**① 개요**

신청인이 본인의 연구를 위하여 피신청인(한국은행)을 상대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혼합소득 통계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분쟁조정신청의 요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후 제공 거부 또는 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이 아닌 정보공개신청을 하였고, 비공개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근거한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③ 결과

신청인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정 신청에 대해 반려를 결정함.

(1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이용의향에 관한 설문조사 데이터(반려)

① 개요

신청인은 연구 및 논문작성을 위하여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발간한 농지연금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의 토대가 되는 농지연금이용 의향에 관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받고자 하였으나 제공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분쟁조정신청의 요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후 제공 거부 또는 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지 않고 피신청인 한국농어촌공사의 해당 데이터 제공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받았으므로 이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음.

③ 결과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반려를 결정함.

(12)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휴·폐업데이터 API(거부)

① 개요

신청인은 ERP 시스템에 사업자 휴·폐업 상태 조회 서비스를 부가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해 피신청인(국세청)에게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사업자 휴·폐업 정보 API를 요청하였으나, 비공개 대상정보(과세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통지를 받은 뒤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 API 존재여부 및 개발 제공의무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의 경우 사업자 휴·폐업 상태가 사업자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API로 실시간으로 갱신되어야 하나, 확인 결과 현재로서는 API 형태의 정보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 계획도 없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이 현재 신청인이 신청한 API를 생산하여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결과

이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할 실익이 없어 조정을 거부하고 절차를 종료함.

III

공공데이터,
분쟁위에 물어보세요



-
1.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2.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3. 분쟁조정 관련
 4. 기타
-

III 공공데이터, 분쟁위에 물어보세요

1.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Q 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요?

A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데이터 중 전자화 된 것은 모두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Q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A 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라면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이거나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권리자로부터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Q 공공데이터에 대외 공개가 곤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제공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제공가능한 정보와 불가능한 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라면 분리가 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공 가능한 정보와 불가능한 정보가 분리가 가능하다면 제공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가집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업무상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라면 해당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 위탁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 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등 공공데이터(저작권) 개방에 관한 전문기관에 문의하신 후 제공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생략)

-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Q 공공기관의 발간물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저작권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분리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A 발간물의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공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발간물의 내용상 분리하는 것이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일체로서 제공거부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경우 기관에게 제공의무가 있나요?

A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는 법률이므로, 외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경우 기관에게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책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특정한 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 신청 받았습니. 신청인의 요구대로 파일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요?

A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가공비용을 부담하는 등 공공기관에 과다한 노력이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Q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후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A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되, 이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17조 제공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수로 제공 후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권리자에게 제공을 해도 될지 의사를 파악해보시고, 권리자가 제공을 반대한다면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을 참고하셔서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2.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Q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제3조제4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영리적 이용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예외규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제한이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3조(기본원칙)

-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Q 이용조건을 부과하여 제공할 수 있나요?

A 네. 공공기관은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과 함께 이용 조건을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사유가 되는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이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별다른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상업적 이용금지와 같은 조건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Q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A 공공데이터는 제공 신청 시 신청목적에 적게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신청목적에 고려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신청목적에 지켜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 제28조의 공공데이터제공 중단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적법하게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라 하더라도 중단 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악용하는 경우 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공공데이터 악용이 확인된다면 그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용’의 범위를 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부당하게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분쟁조정 관련

Q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이 거부되었거나 데이터 제공 중단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제공을 신청한 후 거부통지를 받거나 제공을 받은 뒤 중단을 통보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Q 공공기관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해당 기관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저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주세요. 전화(02-6191-2064) 혹은 이메일(odmc@nia.or.kr)로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적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 '분쟁조정'이라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가 많은가요?

-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제공거부통지서나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원활한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Q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 A**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성립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조정안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Q 이용자가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제3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기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 A** 공공데이터법 제36조에는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책임을 지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중단결정을 할 때에는 공공데이터법 소관 부처,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충분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법

제36조(면책)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Q 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A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만들어지므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이미 생성 또는 취득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 산정에 관해서는 공공데이터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8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법

제35조(비용부담)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법 제3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 보수 비용
 -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 ②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Q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제공은 다른 제도인가요?

A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데이터제공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한 제도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016-2017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인 쇠 일 2017년 12월

발 행 일 2017년 12월

발 행 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기획편집 사무국 이해정(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

유지혜(법학박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

김민지(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원)

주 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전 화 02-6191-2064

디자인·인쇄제작 (사)장애인동반성장협회 동반사업장(02-464-5565)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에서 본서의 전자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